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에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충청북도청내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오송신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 추진
2. 오송역(경부호남고속전철) 설치
3.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4.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5. 월드컵 종합타운 건설
6. 택지개발사업
7. 산업단지조성 사업
8.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
9.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9년 12월 31일 폐지하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조례 1793호 1989. 7. 28)와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설치조례(조례 제2016호 93. 2. 19)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에 의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업무와 시설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가 이를 승계한다.